

1950년대 소설에 재현된 ‘법’과 젠더 정치학*

: 박경리 소설『표류도』를 중심으로

홍순애**

차례

1. 서론
2. 법을 대리하는 ‘관습’의 유제와 축첩의 공포
3.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법적 ‘정의’의 역설
4. ‘윤락녀’의 법적 소외와 법 폭력의 양상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박경리 『표류도』에 나타난 전후 법률인식과 법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법이 국가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당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법은 국가 재건의 필연성 속에서 가부장제의 옹호와 현모양처의 모성신화를 부추기면서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 박경리 『표류도』는 전통적 위계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보수적 담론에 대항하여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전후 일상화된 법치의 동원이 갖는 법의 물신화, 법 도구주의 등은 이 소설에서 축첩제, 우발적 살인, 윤락녀의 법 처벌 과정을 통해 비판된다. 어머니는 가부장의 전통적 유제가 법으로 존속되는 축첩제의 희생양으로 히스테리와 사디즘적 분열을 보이며, 현회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시인하는 법 정의의 역설을 보여준다. 광희는 자살로서 법 처벌의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쓴 논문입니다.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 세 여성의 법 앞에서의 행위는 개인의 권리 수호라는 생명성의 투쟁으로 부권 중심의 관습적 법질서에 저항하고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의미화 된다. 소설은 전후 한국사회의 법에서의 성적 불평등의 상황을 보여주며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법의 모순을 재현한다. 박경리의 『표류도』는 1950년대 법적 ‘정의’가 갖는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가부장적 권위를 대리하는 ‘법’의 식민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젠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에 저항하는 생명의 변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핵심어 : 법률인식, 전쟁미망인, 1950년대, 젠더, 여성문학, 축첩제, 아프레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1. 서론

전후 도덕과 윤리의 혼란 속에서 ‘법’이라는 공적 장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성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법이 선의 대리자로서 또는 규율적 도구로 강제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대신한다. 한국전쟁 이후 식민지 법과 미군정법령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위계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보수적 담론에 의해 젠더 불평등의 문제는 증폭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관습과 가부장권의 유체를 계승한 전후 법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라는 신분관계 안에 여성을 위치시켰고, 여성의 법적 권리는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후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법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문단에 등장한 박경리는 전쟁의 참혹성과 이에 대한 폭력성을 재현하는 동시에 은폐되고 불온시 되던 미망인의 존재를 문학장에 위치시켰던 작가 중의 한 명이다. 박경리 초기 소설들인 『계산』, 『흑흑백백』, 『불신시대』, 『암흑시대』등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질서의 혼란,

가족 상실에 대한 비통함, 실존의 허무를 견디는 여성이 등장하며, 이 여성들은 우울과 히스테리의 자기 분열적 모습을 보인다. 박경리는 『불신시대』의 후기에서 “인간들을 휘감아오는 사회악”과 “인간 정신이 물체화되어 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쓴 것이고, “이 작품을 쓸 때 나는 악마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¹⁾고 언급한다. 이에 김윤식은 박경리 초기 소설들을 “악마적 글쓰기”로 명명하며, 이러한 글쓰기로 인해 박경리의 “창작적 본령”이 무의식중에 드러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마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작품이 『표류도』이며, 이 소설로 인해 박경리 문학이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한다.²⁾ 박경리 초기 소설의 특성인 작가적 경험을 반영하는 서사 구조와 감정의 과잉, 히스테리적 내면 서술은 『표류도』에서 서사적 거리를 확보하며 지양된다.

이덕화는 박경리 소설을 『표류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데, 이전 소설인 『전도』, 『불신시대』, 『암흑시대』 등이 작가의 개인적 체험을 반영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나 불가능한 세계를 작품 속에 그리고 있다면, 이후의 소설 『성녀와 마녀』, 『노을진 들녘』, 『과시』, 『시장과 전장』 등은 폭력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지 않는 자유인이 등장한다³⁾고 평가한다. 박경리 『표류도』는 감정에 의한 내면의 집착보다는 전후 사회상을 객관적으로 관찰, 조망한다는 점에서 초기 소설들과 변별된다. 또한 이 소설은 법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점에서 동시대 여성작자들의 작품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1959년 『현대문학』에 연재된 『표류도』는 전후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급조귀족’의 자본 형성의 비윤리성과 ‘전후파 여성’을 둘러싼 사법체계의 모순을 다룬다. 박경리는 “항상 권위와 자유를 바라보면서 고독한 남성과 굴종하면서 항상 사랑을 지배하고자 하는 고독한 여성 사이에 놓여진 서로 간에 이해될 수 없는 벽은 성(性)이 지닌 본질일 것이

1) 박경리, 『Q 씨에게』, 숲, 1993, 185쪽.

2) 김윤식,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52쪽

3)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77쪽.

며, 그 양성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빛는 오랜 투쟁이, 관습으로 혹은 법률로 묶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여성은 인고(忍苦)의 역사를 살아온 것은 사실”⁴⁾이라 언급한다. 박경리는 여성의 인고의 역사가 사회제도와 풍습, 불문을, 법률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소외적 삶을 살았다고 보고 있다.

법은 근대성을 표지하는 하나의 제도인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되는 힘이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도덕과 윤리로 규제되지 않는 행위들을 처벌하는 권력을 내재하고 있다. 들뢰즈는 공공질서를 위한 가치를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법의 본성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안전하다는 전제를 통해 법은 이미 정의로운 것이 된다고 언급한다.⁵⁾ 이에 법은 선이라는 최상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기에 법의 절대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법이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자발적 복종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의 판결에 대한 수용과 복종은 법이 유지되는 필요조건이 된다.

법 집행의 강제성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법은 문화와 관습에 따라 다른 조항들을 갖는다. 법 조항들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설, 폐기되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갖는 정통성, 정체성의 미래적 모습을 투영하기도 한다. 위스너 행크스는 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관해서 개념적이고 법률적인 정보를 더 쉽게 발견 할 수 있으며, 법이 젠더의 구성을 결정하고, 그 형상을 구조화하기도 한다고 언급한다.⁶⁾ 법 제도 안에 젠더는 선형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인식의 결과로서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녀관계를 규정하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 젠더 관념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젠더 관념은 법 판결에 있어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된다.

4) 박경리, 앞의 책, 43쪽.

5) 김명주, 『국가-법-폭력』에 대항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 들뢰즈의 '문학 철학'에 나타난 '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107쪽.

6) 메리 E. 위스너-행크스, 『젠더의 역사』, 노영순 역, 역사비평사, 2001, 137쪽.

한국전쟁 이후 식민지 법과 미군정 법령이 계승,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은 전후 사회에서 배태되는 문제들을 포괄하기에 역부족이다. 전후 여성 정책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부녀국에서 담당했으나 업무의 중심이 여성의 의식개혁과 가정생활의 근대화를 위한 계몽사업이 주가 되면서 여성의 법적 주체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관습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히 받아들임으로써 여성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했고, 이혼, 재혼 등 여성의 법적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다.⁸⁾ 정부는 전후에도 '전시생활개선법'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 통제하면서 전쟁미망인, 양공주, 윤락여성들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국가 재건을 위한 정책과 법령이 제정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법에서 소외되었다.

박경리의 『표류도』는 전후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법적 차원으로 서술한다. 소설은 38장중에 31장부터 36장까지의 살인사건의 발생과 재판을 받는 과정, 형의 집행, 감옥의 실상 등을 서술하면서 1950년대 제1공화국의 사법체계와 법 집행 과정의 세부적 절차를 설명한다. 이 소설은 플롯의 차원에서 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살인자가 되는 인물의 심리적 징후들을 서술하고 있고,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법리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소설은 전쟁미망인이 살인자가 되는 과정과 재판에서 소외되는 과정, 여성 인물들의 수감생활 등을 통해 전후 사법제도의 실체와 법 폭력의 양상을 보여준다.

7)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270쪽. 미군정청은 1946년 9월14일 미군정 법령제 107호로 부녀국 설치령을 발표했다. 부녀국의 창설과 여자 경찰 제도의 신설은 미군정이 수행한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부녀국은 계몽 활동으로 여성 일반의 계몽과 함께 이를 지도할 여성을 양성하고자 했으며, 여자 경찰제도의 목적은 성 판매 여성이나 불량 여성의 단속에 있었다. 미군정은 여성을 일반여성과 불량여성으로 구분하고 국가기구인 부녀국과 여자경찰서가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8)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234~235쪽.

2. ‘뱀’을 대리하는 ‘관습’의 유제와 축첩의 공포

『표류도』에서 젠더적 측면의 법의 불평등의 문제는 다방마담의 연애와 우발적 살인으로 재현된다. 소설은 “현기의 사춘, 광희의 방종, 나의 연애”로 “세 가락의 헛갈림, 황량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장극”이다. 소설은 어머니의 삶을 표상하는 축첩에 의한 희생제의적 모성, 현희의 다방마담의 법적 투쟁, 광희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소외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축첩의 희생자로서의 어머니와 딸의 갈등관계는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박경리 소설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암흑시대』, 『불신시대』, 『시장과 전장』등을 통해 재현되었는데, 『표류도』에서 어머니는 불행한 딸의 모습을 투영하는 쌍쌍둥이의 운명체로 그려진다.

강현희는 S대 사학과를 나온 전쟁미망인으로 다방을 경영하면서 어머니와 이복동생 현기, 자신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아침마다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부리는 어머니의 습관은 혼자 살아온 여자의 특유한 신경질”로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방랑기와 축첩으로 “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아 본 일이 없는” 여자이다. 그리고 현기는 어머니의 불우한 삶을 증명하는 존재로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업둥이며, “반항적이며 격정적인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저주 대상이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축첩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고, 이에 어머니는 신세 한탄과 자기 학대를 지속하며, 이것은 “일종의 사디즘”으로 발현되어 현기의 가출과 현희의 발작 원인이 된다.

영화를 보면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에 본 영화 부활을 생각했다. 그 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기생 소화가 어머니하고 나를 극장에 데리고 간 것이다. 정거장에서 카츄사가 쓰러지는 장면, 카츄사가 치마를 걸어 올리고 담배를 꺼내던 장면이 지금도 어슴푸레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때 영화를 보고 난 뒤 극장을 나오면서 소화가 하는 말이 “아무리 천한 계집일지라도 배반

한 사내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신통하지요. 형님?”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그년 나를 보고 비양을 치는 모양이구나.” 그 후 소화는 아편쟁이가 되더니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 어머니는 팔자는 사나위도 인정스런 계집이었는데 하고 불쌍해했다.⁹⁾

아버지는 중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축첩을 지속했고, 그 고통은 어머니에게 전가된다. 어머니는 기생 소화에 의해 “배반한 사내를 받아들인 천한 계집”으로 명명되는 수난을 당한다. 첩이었던 기생 소화에 능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축첩을 거부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처는 신경질과 히스테리로 나타난다. 축첩제는 어머니의 고통의 근원 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어머니는 희생자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해방 이전 축첩제가 법률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혈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관습과 인습의 이름으로 전후에도 지속되었고, 어머니의 축첩에 대한 고통은 가부장제 하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실 축첩제¹⁰⁾는 갑오경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여성계와 근대주의자들에 의해 폐지가 논의되었던 악습 중의 하나였다. 해방 후에 축첩은 봉건성을 대표하는 제도로 지목되면서 공창 폐지와 함께 논의되었다. 1953년 제정 신형법에서는 ‘간통쌍벌죄’가 제정, 축첩에 대한 법적 제제가 이루어졌고, 1957년 신민법 제 776조에서는 ‘가족이 혼인 외에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¹¹⁾ 이전 민법에서 혼외자의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 입적되었기 때문

9) 박경리, 『표류도』, 나남출판, 1999, 98쪽.

10) 1914년 ‘조선민사령’이 선포되면서 축첩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에서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가 성문화 되고, 1921년 중혼금지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923년에는 법률혼주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은 가부장제 부권의 권위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존속되었다.

1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95쪽. 여성단체들은 축첩자의 공무원 임용제한을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부결되었고, 이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1953년 신형법에 의해 ‘간통쌍벌제’가 제정 되면서

에 이러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축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률이나 관습이 남의 집 문턱 안으로 들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신형법 실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축첩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될 수 없다”¹²⁾는 법원의 판결로 축첩에 대한 법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축첩이 중벌과 가문의 이름으로 집행됨으로써 전통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근대 법 위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표류도』에서 어머니는 축첩의 직접적인 희생자였고, 이러한 피해의식은 히스테리로 발현된다. 현회가 유부남인 상현과 외박하자 어머니는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가차 없이 매질”을 한다.

그러나 틈바구니를 살살이 뒤흔드는 듯한 눈초리,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 애통하고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는 쉴 새 없이 나를 덮쳐준다. 그리고 말없는 어머니한테서 이상한 어휘들이 마치 송신기에서처럼 날아온다. 자리에 누워서 눈만 감으면 온통 무엇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속에 싸인다. 그것은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닌 몽롱한 상태이다. 그 온통 무너지는 음향은 차츰 어머니의 고함소리로 변한다. 나는 그 고함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도망칠려고 날뛰다가 눈을 떠보면 사망에는 고요한 밤이 있을 뿐이다. 어떤 때는 몽둥이를 든 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절벽에서 뒹굴고 냇물을 휘젓다가 꿈을 깨는 수도 있다. ¹³⁾

어머니는 딸이 ‘탕녀’가 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애비도 없는 혼아를 낳았다는 것에 대한 심한 모욕을 들었을 때처럼 현회는 어머니의 호된 질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54년 헌순원에 의해 제기된 간통 쌍벌죄 고소사건은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왔는데, 이 재판이 진행될 때 법정은 여성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미처 법정엔 입장하지 못한 여성들은 창문위로 올라가서 방청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여성들의 간통쌍벌죄에 대한 관심을 매우 폭발적인 것이었고,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2) 이임하, 위의 책, 171쪽.

13) 박경리, 위의 책, 180쪽.

책을 참아내며 침묵한다. 이 침묵은 어머니 삶의 가해자와 동질화 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 존재를 통해 각인되는 정상가족을 훼손했다는 죄의식과 불륜녀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악몽으로 나타난다. 딸에게 어머니는 자기 내면에 잠복한 불안감을 현실화하는 존재이기에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무의식의 거울과 같다.¹⁴⁾ 남근적 법의 희생자인 어머니의 비난이었기에 이에 대한 죄의식은 증폭되어 분열적 증세로 표출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천사”라는 자기규정의 아이러니한 양면성은 극단적 자기혐오로 내면화되고, 이것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낭만적 연애에 대한 불안의 징후로서 잠복되어 발작의 원인이 된다.

전후 가부장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혼란을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면서 성차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생산했다. 가부장적 국가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는 가정주부로 명명되는 부인과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미망인, 양공주, 윤락녀 모두에게 위압적인 장치였다. 특히 축첩제는 처와 첩의 모두를 희생자로 몰아넣는 제도였고, 젠더 불평등의 기원으로 작동되었다. 소설에서 축첩제에 대한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딸의 불륜으로 인해 사디즘적인 공격과 분노로 표출되고, 딸은 죄의식으로 매저키즘적인 자기학대를 지속하며 발작의 육체적 분열을 반복한다. 전후 가부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군림했던 축첩은 현모양처의 모성신화를 부추기면서 국가재건의 당위성 속에서 존속했고, 이것은 『표류도』에서 어머니의 희생체의로, 현세의 불경한 연애에 대한 죄의식의 근원이 된다. 또한 전후 엘리트 지식인 남성의 허위성이 축첩의 행위와 동일시되면서 소설에서 이것은 살인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

14)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 - 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학 이론과 비평』 45집(13권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239쪽.

3.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법적 '정의'의 역설

『표류도』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과 감옥의 수감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전후 법의 젠더적 차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현희는 법의 젠더 불평등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자기분열로, 외적으로는 저항을 동시에 수행한다. 성의 상징적 질서, 특히 법으로 공고화된 부권 중심적 사회를 교란하는 인물인 현희는 1950년대 젠더적 과거를 대표한다. 가부장적 권위의 상징인 '법'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살인자로 처벌되는 플롯의 구성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다방 '마돈나'의 마담 현희가 카운터에서 뜨개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현희는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방을 경영하지만 "노동을 팔았지 얼굴을 팔지 않는" 자존감과 결벽성을 가진 전쟁미망인이다. 현희는 "입안이 뻑뻑해서 씹어 볼 수없는 못된 툇감"과 같은 인물로 손님들의 속물성과 협잡을 묘파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다방은 전후의 아노미적 사회의 축소판으로 묘사되며, 카운터는 일종의 "감시대"로 설정된다. 다방은 "온갖 속물들이 자기의 창자까지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공간인 동시에 사기와 불법을 모의하는 "거래장소"로 묘사된다. 소설은 냉소적으로 다방 안에서 벌어지는 전후 사회의 부조리와 탈법, 불법의 상황을 서술한다.

소설은 전쟁미망인 현희와 D사 저널리스트인 상현의 연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고학생회에서 만난 의과생 찬수가 전쟁 중에 죽고 혼자 사생아를 키우는 미망인 현희의 정체성은 이 연애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되며, 그로 인해 현희는 "아큐정전의 아큐처럼 웃음거리"로 전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는다. 그리고 "상현씨에게 부인이 있다는 것과, 상현씨가 살아온 세계가 다르다"는 것은 "그리움 속에 뻑적지근한 적대의식"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륜적 애정관계와 계층의 이질감 속에서 현희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망은 스위트홈의 환상으로 대체된다. 이 환상은 현희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현실에 의해 환상이 깨질 때 현희는 살인자가 된다.

그 방에는 자그마한 요람이 놓여 질 것이다. 장난감인 개와 인형이 굴러 있다. 잠시 동안 나래를 접은 천사같이 잠들어 버린 아이가 있다. 세월이 흐른다. 흰 구도에 흰 양말을 신고 챙이 얇은 분홍 모자에 역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아기가 뜰 안에서 뛰어간다.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가 웃으며 끌어 올린다. 서재하고 침실은 아기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공용물이 된다. 우리는 달이 밝은 밤이나 별이 지는 밤에 조용한 블루스를 춘다. 후리후리하니 키가 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어린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안경을 걷어 올리면서 내 머리를 쓸어줄 것이다.¹⁵⁾

내 시선은 분별할 겨를도 없이 그곳에 가 있었다. 아아, 상현씨가 거기에 있다. 햇볕이 포근하게 내려쬐는 곳, 흰 창살의 유리문 안의 마루, 긴 쇼파가 있고 그곳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 부인과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다. 정답게 행복스럽게 오래간만에 만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¹⁶⁾

현실에서 실패한 욕망은 환상을 통해 대리 체현된다. 환상은 허무와 고독을 본질로 하며, 무의식적 발현이기에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상현과의 스위트홈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욕망은 환상을 통해 대리 체험된다. 첫 번째 인용문은 현회가 상상하는 상현과의 스위트홈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현실에서 목격되는 상현부부의 스위트홈이다. 전자는 상현의 약속을 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위트홈을 상상하는 부분이며, 후자는 상현부부가 거실에서 다정하게 딸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다. 현회가 욕망하는 스위트홈이 사랑의 결실로서 행복의 가능성을 투영하면서 환상으로 나타난다면, 상현부부의 스위트홈은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로 목격된다. 이 두 차원의 스위트홈은 환상과 현실로 극명하게 대립된다. 스위트홈에 대한 환상이 단지 자기위안에 대한 위장임을 깨닫는 순간 현회는 무의식적 현실 거부로서 구토를 시작

15) 박경리, 위의 책, 128쪽.

16) 박경리, 위의 책, 249쪽.

한다. 즉 상현부부의 스위트홈을 현실에서 확인함으로써 현회는 불륜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이에 대한 자기 거부의 행위는 구도와 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소설에서 현회의 발작은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 발작이 어머니로 포상되는 가부장적 법이 빚어내는 불안과 공포의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발작은 젠더 폭력에 맞선 정체성 유지, 저항 행위로 의미화 된다. 상현부부의 스위트 홈을 목격하고 “무질서하고 균형을 잃은 신경, 발광의 상태”로 마돈나로 돌아온 현회는 최강사의 “이런 곳에 있는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니까” 성적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는 언급에 청동 꽃병을 던진다. 그리고 “사방이 찌그러지고 비틀어지던 환각”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는다. 최강사는 다방 손님으로 협잡과 사기, 밀수를 일삼는 대학강사로 엘리트 지식인의 비열함과 이중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술된다. 최강사는 미국인 스미스에게 현회의 성을 ‘매매’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본 현회는 발작을 일으키며 청동 꽃병을 던지게 된 것이다.

꽃병을 던지는 현회의 행위는 사회적 살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연상시킨다. 여기에서 “마(魔)의 소행”으로 인식되는 우발적 살인은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 발작에서 깨어났을 때 현회는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이 자기 보존을 위한 정당방위였기에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현회의 죄의식 부재는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성립되지 않기에 가능하다. 현회의 행위는 전쟁미망인, 다방마담이라는 이유로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남근 중심적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전후 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항이었던 셈이다.

소설은 현회의 살인죄에 대한 형법 재판의 유죄판결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한다. 현회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고, 취조실에서 문초를 당한다. 그리고 형무소에 임시 구금되어 취조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재판의 절차는 검찰청 출두, 공판정 입장, 공판정에서 검사의 취조, 인정신문, 검사의 사건진술, 증언, 검사의 논고, 변호사의

변론, 재판의 선고로 이어진다. 검사가 살인죄에 대해 5년 구형을 하고 재판은 연기된다.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현회는 일 년 육 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재판 결과에 대한 피고측과 검사측의 공소제기가 없었기에 현회는 기결수 감방으로 이송되어 형을 살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은 재판의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살인에 대한 동기와 피고의 신분에 대한 논쟁이다.

“동기는 어디까지나 모욕적인 언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로 저를 외국인에게 매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생아를 낳고 다방의 마담이기는 했지만 분명히 저는 창부가 아닙니다.” 강한 어조로 또다시 쏘아버렸다. 검사는 불손한 내 태도에 노한 것 같았다. “야합을 해서 사생아까지 낳고 많은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 다방 마담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남자의 그만한 희롱쯤 받아 넘겨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무슨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처녀도 아니요, 가정주부인도 아닌 처지에서.....” 환경과 조건만으로 특정한 범주 속에만 나라는 인간을 집어넣는 검사의 고정된 관념 앞에서 새삼 무슨 항변을 하겠는가. 하긴 검사도 한 사회의 산물이니 사회의 통례를 좇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인가. (누군가 고도의 법리학은 예술의 경지라고 했다. 완전히 정치가 최고 예술인 것과 같이) 17)

검사는 사생아 출산, 마담이라는 직업, “가정주부도 아닌 처지”라는 이유로 살인죄 5년형을 구형한다. 검사에 의하면 다방 마담의 ‘정조’는 법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다방 마담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법의 바깥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가부장적 정조론이 득세하면서 여성이 실존적 추구로서의 로맨스의 주체가 되는 대신 순결의 심판을 받는 가부장제의 타자가 되었음을 암시한다.¹⁸⁾ ‘관습’, ‘통례’,

17) 박경리, 위의 책, 280쪽.

18)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 제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92쪽.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재판에서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검사의 사건 진술은 전후 사회의 관습적 성 관념을 대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직업적으로 ‘정조’가 의심되는 여성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재판은 ‘정조’를 기준으로 여성을 비국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설에서 재판에 대한 내용은 1955년 당시 ‘법정 최대 쏘’(『경향신문』 1955. 7.10)인 박인수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박인수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권순영판사는 “정조라고 하여 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 비추어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을 때 한하여 법은 그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貞淑한 여성의 건전한 정조만을 법은 보호한다.”¹⁹⁾라는 판결을 내려 박인수의 형법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고소를 한 여성이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아니기에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²⁰⁾는 정숙한 가정주부로서 가부장

19) 권순영, 『왜 그들의 貞操는 法이 保護못했나- 朴仁秀 無罪言渡의 法的 說明』, 『여원』, 1955.10, 102~108쪽. “刑法의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관관의 주관에 의하여 함부로 유추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罪刑法定主義의 요청이다. 형법의 目的은 개인의 人權을 옹호하는 동시에 社會秩序를 유지하는데 있다. 刑法에 엄연히 『婚姻을 憑籍하여 婦女를 欺罔하여 姦淫한 者』를 處罰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未婚女性과 姦淫하였다고 그자를 미워하여 婚姻을 憑籍한 사실도 없는 자를 法官이 處罰한다면 그 社會는 不安과 공포에 빠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미운 것과 法的 處罰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중략) 형사재판의 근본이념은 『아름다운 사람의 죄인을 노치는 限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데 있다.(중략) 우리 나라의 美風良俗인 貞淑하고 貞操觀念이 강한 女性이 婚姻한다고 믿지 않았으면 도저히 정조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認定될만한 事情이 있을 때에 法은 그 貞操를 보호하는 것이다. 댄스란 人間이 엄숙하였을때가 아니며 댄스홀이란 결혼의 상대방을 조사 검토하기에는 부적당한 장소이다. 人生의 청춘을 享樂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제공한 정조를 法은 보호할 수도 없으며, 거기에 간섭하여서도 안된다.” 권순영은 이 글에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 자유주의 국가의 법이며, 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규율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기사에는 형법의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올바른 판결을 했음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권에 충실한 여성을 표본으로 한다. 이에 여성은 “상습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것은 재판의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정숙하지 않은 여자’로 나누고, ‘정숙하지 않은 여자’는 법정에서 성적 이력을 낱낱이 심문당하는 ‘사회적 처벌’을 받음²⁰⁾으로서 여성은 이중처벌된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는 현모양처의 신화에 의해 만들어진 모순된 개념임에도 이것은 여성 정조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로 인정되었다.

재판에서 검사의 논리와 변호사의 논리는 결국 가부장제 대 여성의 권리 문제로 귀결된다. 변호사에 의하면 현회는 전쟁의 피해자이며, 우수한 학력의 고학생이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정숙한 여성이다. 법 앞에서 현회의 정체성은 ‘아프레겔’과 ‘정숙한 여성’으로 대립되며, 이것은 살인의 원인과 결부되어 중요한 논점이 된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증명하지 못한 전쟁미망인의 우발적 살인은 사회 질서에 대한 반항, 개선의 빛이 없는 천성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중형으로 처벌된다. 현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인하는 검사에 불복하여 대항하지만, 이러한 대항이 자신의 형량을 늘릴 뿐이라는 깨달음에 항소를 포기하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 관습이 내재된 법률인식은 한 개인의 사건만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남근적 상징인 법체계는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현회는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회는 법의 부당성을 수증하고, 형량을 적게 받는 방법을 찾게 된다.

20)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는 형법에 등장하는 용어로 정조에 따라 여성을 분할하고 문란한 여성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는 개념이다. 법조문에서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혼인빙자간음에서 고소인의 성적 이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다. 해방 후 새로운 형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형법에는 없던 혼인빙자간음죄가 추가 되었다. 일본개정형법가안의 혼인빙자간음죄는 보호 객체인 부녀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제정형법은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였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은 현행 형법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무엇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 역사』 94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263~264쪽.

21) 박정미, 위의 논문, 288쪽.

살인이 정당방위를 위한 행위였음에도 현회는 무죄 대신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검사와 타협한다. 감옥 밖에는 자신이 돌봐야 하는 어머니와 딸이 있기에, 법적 ‘정의’ 보다는 ‘삶의 방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에서는 피고의 살의가 없었다는 점,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온 정당방위를 인정함으로써 일 년 육 개월 징역을 최종 선고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방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현회는 불공정한 법 판결을 수용한다. 무죄를 증명하면서도 살인을 시인하는 행위는 법 ‘정의’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법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 위반을 통해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것, 이것이 법의 역설이다. 전후 여성의 우발적 살인이 ‘정당방위’에 의한 ‘무죄’임에도 유죄를 선고하는 국가의 법은 그 판결을 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현회가 “무감동하게 법정”을 나온 것은 법의 주체가 아닌 법의 타자가 되는 현실에 대한 수궁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젠더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신 짧은 형량을 얻는 거래는 그래서 무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벤야민이 말한 것처럼 “법이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허가된 강제력으로서의 법의 모순을 『표류도』는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현회가 출옥 후 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극도의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매우 지루하게 서술된다. 딸을 잃은 상실감과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은 낭만적 연애를 욕망했던 과거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다. 젠더 불평등에 대한 대항과 타협,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은 성장플롯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현회가 새로운 삶을 모색하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복귀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남근적 질서를 비판하고 대항하던 여성인물이 스위트홈으로 귀환하는 서사는 앞부분의 내용과 대치되면서 주제적 일관성을 상실한다. 개연성 없이 여성인물이 개심하는 장면은 소설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하고 작가의 젠더인식을 의심하게 하지만, 이러한 결말은 ‘성’의 이분법적 대결보다는 삶의 연장으로서의 ‘생명성’의 원리를 중요하

게 인식했던 박경리 소설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윤락녀'의 법적 소외와 법 폭력의 양상

『표류도』에서 현회가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는 인물이라면, 광희는 전후 남성사회에서 성적으로 농락당하는 '전쟁고아'의 운명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전자가 젠더 불평등의 상황에서 법 투쟁 과정을 보여준다면, 후자는 윤락녀로 전락한 하층민 여성의 법적 소외를 보여준다. 광희는 현회가 마담으로 있는 다방의 레지로 낭만적 사랑에 실패하고 성적 타락의 길을 걷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현회는 광희의 타락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으며, 광희의 비윤리적 행위에 방관적 태도를 취한다. 박경리의 소설 『성녀와 마녀』, 『시장과 전장』, 『김약국의 딸들』에서 여성인물들은 자매와 동료의 타락을 지켜볼 뿐 연대하지 않는다. 여성인물들은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거나(『성녀와 마녀』) 포탄이 떨어지는 피난길에서도 동료의 생사에 무관심하며(『시장과 전장』), 자매의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김약국의 딸들』). 이 여성인물들은 객관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내면세계로 침잠하며, 자기연민에 매몰되어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하다. 혼자 시련을 견디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여성들은 『토지』 이전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토지』에 이르러 여성인물들의 시각이 사회, 역사로 확장됨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타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동료애, 자매애를 형성한다.

『표류도』에서 광희는 한국전쟁 때 가족과 헤어지고 월남한 전쟁고아이다. 빈곤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마돈나에서 레지로 일하고 있는 광희는 이 소설에서 '아프레겔'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소설에서 광희의 육체는 매우 에로틱하게 서술된다. 광희는 “육과처럼 단단한 젓가슴”과 “세상이 덜 상막해지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얇은 슈미즈 안에 불룩 솟은

유방이 터져버린 무화과처럼 완숙”한 여성으로, 음산한 마돈나의 공간에서 청정한 아름다움을 내뿜는 “신선한 능금을 연상케 하는 소녀”이다. 현회의 초점화로 서술되는 광희의 육체는 생명성이 가득한 것으로, 때로는 신성함이 깃든 몸으로 묘사된다. 광희는 시인 민우를 사랑하지만 민우는 현회를 욕망함으로써 삼각관계를 이룬다. 민우는 자신을 외면하는 마담에 대한 반감으로 광희를 성적으로 탐닉하게 되고, 광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다. “사막에 피는 사보텐의 꽃처럼 지독하게 강렬한” 광희의 사랑은 민우의 결혼으로 실패하고, 광희는 아이를 낙태하고 윤락녀로 전락한다.

얼마동안 입었는지 남빛 자켓은 실이 풀어져서 너털너털 허리를 감고 있었다. 휴지 한 장 자기의 것이라곤 지닌 것이 없는 광희는, 그렇게 정결했던 광희는 지금 손등에 때를 덕지덕지 올려가지고 그 때가 냉한 바람에 터져서 그 사이로 불그스름한 살이 배어나 있다. 그리고 악취를 발산하고 있는 광희의 몸뚱어리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송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중략) 광희는 빈번히 그런 발작을 일으켰다. 벌레가 사방에 우글우글 뒤끓는다고 했다. 연신 방안으로 지금 수천 없이 몰려 들어온다고 소리 소리쳤다. 마룻바닥을 구르고 심지어 내 등허리에 새까맣게 벌레들이 기어 올라간다고 외치면서 수건으로 내 등허리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가엾은 이 광희를 위하여 울지 않을 수 없었다.²²⁾

소설에서 광희의 서사는 극도의 빈곤에 의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전쟁고아의 비극을 보여준다. 전쟁의 희생자로서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남성에게 농락당하는 ‘고아’의 운명은 비참하게 서술된다. “몸을 제공하고 한 끼와 하룻밤 숙소”를 해결하는 광희는 손님의 돈을 훔쳐 형무소에 수감되고 살인죄로 재판받은 현회와 만난다. 현회보다 먼저 수감된 광

22) 박경리, 위의 책, 275~276쪽.

희는 악질 성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미치광이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였다. 소설 초반에 광희의 육체는 “청정한 아름다움”과 “청순한 능금”으로 비유되었으나, 소설 후반 형무소에 수감된 광희는 악취를 발산하는 “몸뚱어리”로 표현된다. 광희의 몸은 성병으로 “썩어 가고”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다. 광희의 발작에서 환기되는 벌레와 수천마리의 뱀은 여성의 몸을 훼손하는 자본과 가부장 권력으로 해석된다. “촛불에 나래를 태운 한 마리의 파리”로 비유되는 광희의 육체는 성적으로 학대 받는 여성의 비극적 죽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조’를 상실한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불온한 존재로 낙인찍힌 계도할 대상이었다. 전쟁고아, 전쟁미망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은 ‘탕녀’로 인식되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 만을 법에서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이들은 법에서 소외되었다. “썩어지는 것은 완전히 썩어버리게 내버려두”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이 여성들은 법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비국민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윤락여성은 전후 재건을 모토로 하는 가부장적 사회를 균열 내는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광희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고 범죄자가 되어 수감되는 과정은 전쟁고아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미흡과 법적 장치의 부재에 대한 알레고리라고도 볼 수 있다. “고약한 악취”로 표현되는 광희의 육체는 역설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의 무능에 대한 비유로도 해석 가능하다.

법에 의한 처벌은 범죄자의 사회적, 도덕적 본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²³⁾ 하지만 법의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처벌은 폭력으로 집행되면서 희생자를 양산한다. 감옥이 죄에 대한 처벌로서 공포심을 갖게 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교화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설은 감옥을 또 다른 법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으로 설정한다.

23) 아르노기그, 『법, 정의 국가』, 민혜숙 역, 동문선, 2003, 102쪽.

이곳 주민들의 범죄의 동기는 거의 다 애정문제 아니면 빈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엔 사회라는 공동기구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또는 박해를 받은 조건이 반드시 개재되는 것이다. 그들의 범죄 사실에는 어느 뜻에서든 엄밀한 선악(善惡)의 기준이 성립될 수 없다. 사회질서나 사회의 규범을 떠나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고향에서 선악의 기준을 세워볼 때, 작은 반항과 계산이 서투른 이성, 그것은 무지의 죄다. 누군가 무지는 죄악이라 말한 것처럼, 나도 계산기의 고장으로 죄 강사를 죽였다. 그 순간 나의 교활한 삶의 질서는 반항심과 미움에 맹목이 되었던 것이다. 마음의 고향에서 정말 선악의 기준을 세워본다면 더 간악하고, 더 악랄하고, 그러나 그들은 정교한 계산에 움직이며 궤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으로, 질서인으로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24)

소설에서 감옥에 갇힌 여성들은 ‘수감자’로 표현되지 않고 ‘주민’으로 서술된다. 죄를 지어 수감되었지만 이들은 법적 차원으로 호명되기 보다는 수감자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민’으로 지칭된다. 죄인과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같이 공동생활을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로서 ‘주민’으로 호명되는 것이다. 이 여성들은 처첩의 갈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었고,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갖고 있다. 간첩으로 오인되어 수감된 여인, 전남편을 죽인 남편을 살해하고 수감된 여인 등 이들은 “온갖 것에서 버림을 받은” 희생자로 묘사된다. 소설에서 이 여성들은 경멸의 대상이기 보다는 연민의 대상으로 서술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법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약자라는 점이다. 법에 ‘무지’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약자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서술된다. 이들의 죄는 윤리적 잣대에 의한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후 반공법에 의한 강압적 법집행,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엘리트 사법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 법이 개인의 권리와

24) 박경리, 위의 책, 294쪽.

이익을 지켜주지 못하고, 권력의 유무가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전후 한국사회의 법제도의 실체는 이 소설에서 비판되고 있다.

제1공화국 시기 전시특별법, 부녀법, 가족법 등이 제정, 개정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법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에 여성잡지들은 기획 기사를 통해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여성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대중종합잡지를 표방한 『희망』은 <법률상담 Q & A>을 기획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여원』 또한 잡지 발간 초기부터 <법률상담>이라는 코너를 연재하면서 일상에서 문제되는 법에 대해 여성법률상담소의 자문을 받아 독자들과 소통했다.

문: 약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여 두 남매 자녀를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재혼할 당시에 남편은 본처가 사망하였다고 함으로써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본측 호적상 처로 입적되어 있는 아내를三八이복에 남겨놓은 채 홀로 살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이복에 있는 본처와의 출생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 본처와의 이혼방법 및 저와의 혼인신고 방법, 자녀들의 부모란 정정절차를 자세히 지도하여 주십시오.

답: 우선 당신의 현재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당신의 남편은 이복에 있는 본처와 이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처가 이복에 있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이고 부득이 재판상 이혼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확정판결(確定判決)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소생자녀가 본처 간에 출생한 적출자로 되어 있으면 중대한 신분관계임으로 이것 역시 인사소송(人事訴訟)을 일으키어 서자(庶子)로 정정한 다음 당신과 현재의 남편과의 혼인 신고를 하면 그 후는 당신의 적출자로 되는 것입니다. (『여원』, 1958.5, 324쪽)

<법률상담>은 독자의 편지를 선별하여 법률전문가가 조언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편지를 보내는 독자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이들은 본처의 법적 지위, 첩 자녀의 호적입적, 이혼의 절차, 이혼 후 재산상속 등 결혼과 이혼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여기에서 축첩과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여원』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지식>(1959.9월호, 113-114쪽)을 게재하여 전후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법률적 지식을 전달했다. 한국전 참전 미군과 한국 여성의 결혼, 이혼 소송은 신분상, 재산상 “국제사법”, “사적국제생활관계법”에 의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잡지에서 이러한 법률상담을 연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이 법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축첩과 관련한 가족법은 전통,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첩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법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법 대한 관심은 증가 할 수밖에 없었다.

『표류도』에서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회와 광희 두 여성으로 한정된다. 소설은 ‘급조귀족’들의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법 위반을 묘사하지만 이들은 도리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국가의 돈도 몇 천만 환씩 홀렁 삼켜버리고, 사병들을 힐벗기고 배 굶려 가면서 수백만 환을 횡령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국가의 법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신문지상에서 시끄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성급 부정사건”은 전후 권력층의 탈법과 불법의 실체로 제시된다. 소설은 이러한 권력층의 부패와 불법의 형태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의 카르텔은 매우 공고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법에 ‘무지’한 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이용하는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류도』는 법제도에 의한 가부장제의 폭력을 다양한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주체성이 강한 여성인물이 소설 결말에 갑작스럽게 가부장제로의 복귀를 결심하면서 앞의 논의를

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성인물이 남근적 법 제도에 대항하였지만 실패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스토리라는 점에서 『표류도』는 정미석의 『자유부인』과 흡사하다. 『자유부인』의 '오선영'이 남자들의 공적 세계를 동경하여 가정을 뛰쳐나오고, 사랑과 사회생활에 실패하여 집으로 복귀하는 여성이었다면, 『표류도』의 현희는 남성사회에 대해 혐오하고 이에 저항하지만, 이에 실패하고 결혼을 결심한다는 점에서 두 여성은 비교된다. 『표류도』는 『자유부인』에서 보여주었던 여자들의 자유와 행복이란 오로지 결혼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낡은 젠더 정치학, 수사학²⁵⁾을 그대로 계승하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현희는 남성세계의 진입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세계를 비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영이 가정으로 강제 소환되는 상황이라면, 현희는 새로운 삶의 모색 방법으로 스스로 결혼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자유부인』의 남성인물들은 처벌되지 않지만, 『표류도』의 최강사는 죽음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두 소설의 젠더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경리는 당대 남성 작가들과 차별화된 젠더인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결말에 현희가 번역 일을 선택하는 부분은 여전히 여성의 주체성은 지켜져야 하며, 그것은 번역을 통해 세계에 대해 '발설'하고 '다시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작가의 의지로도 읽힌다. 가부장적 세계를 비판하면서도 수용하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박경리 문학이 갖는 생명성의 원리, 즉 생명의 보편적 원리를 인간의 삶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일 것이다. 박경리는 '여성'이기보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이것은 박경리가 '여성소설가'로만 호명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25) 심진경, 『성적 가면과 정치적 욕망』,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 모음, 2015, 218쪽.

5. 결론

카프카는 『심판』에서 법을 내용이 없는 순수한 텅 빈 형식이라 정의하며 법의 인식불가능성²⁶⁾을 언급한 바 있다. 타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법은 모습을 드러내며, 법 조항에 의해 죄가 성립된다. 법이 사회적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물리적 강제성을 동반할 경우, 이것은 법 집행의 폭력으로 상징되며 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은 애초에 선에 의해 정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갖는다. 국가가 막강한 힘으로 법이라는 통치 수단을 통해 다수의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기구라고 정의한다면, 언제나 법과 정의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다.²⁷⁾

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구상했던 제1공화국은 미군정법령과 식민지 법을 계승하는 한편 어떻게 법이 국가의 정체성을 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후 정치적 격동과 불안정한 헌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법을 정비할 시간과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고, 이에 사법제도는 미국인 관리 엔더슨의 말처럼 “불가피하게 잡종적 결과를 낳았고” 그나마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²⁸⁾ 한국전쟁 이후 제1공화국은 법의 탈식민화와 근대적 사법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관료적 사법체제를 형성, 강화했고, 이 시기 법은 국가재건과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적으로 집행되었다. 또한 가부장의 이념적 보수성으로 인해 법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조장되고 확대됨으로써 여성의 법적주체로서의 권리는 공백으로 남겨지게 된다.

박경리는 『표류도』에서 엘리트 남성집단의 헤게모니가 집적된 ‘법’의 실체를 문제 삼는다. 또한 박경리는 이 소설을 통해 전후 한국사회에서

26)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7.11월호, 1749쪽.

27) 김명주, 위의 논문, 106쪽.

2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910~911쪽.

법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표류도』는 법이 남성의 상징적 질서를 대표하고 있고, 남성 가부장의 비윤리성과 폭력성이 '법'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을 세 여성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여성 억압의 역사가 '법'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류도』는 법제도로 전통적 위계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보수적 담론에 대항하여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후 일상화된 법치의 동원이 갖는 법의 물신화, 법 도구주의²⁹⁾ 등은 이 소설에서 축첩제, 우발적 살인, 소매치기 윤락녀의 법 처벌 과정을 통해 비판된다. 법 질서라는 이름으로 젠더적 억압이 자행되는 전후 한국 사회의 부조리는 소설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포괄되지 않는 전쟁미망인과 ‘전후파 여성’을 통해 제시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다방마담, 여급, 윤락여성은 ‘정조’를 상실한 ‘탕녀’로 규율의 대상으로서 법에서 소외되었고, 이러한 정황은 『표류도』의 어머니, 현희, 광희를 통해 제시된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가부장의 전통적 유제가 법으로 존속되는 축첩제의 희생양으로 히스테리와 사디즘적 분열을 보이며, 현희는 무죄를 입증하면서도 유죄를 시인하는 법 정의의 역설을 증명하고 있다. 광희는 자살로서 법 폭력의 위악성을 보여준다. 이 세 여성의 법의 젠더 불평등에 대항하는 방식은 사디즘적 분열을 지속하거나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법 판결을 수용하는 것, 법 폭력의 상황을 죽음으로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 수호라는 생명성의 투쟁으로 부권 중심의 관습적 법질서에 저항하고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세 여성을 통해 전후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불안의 징후를 보여주며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법의 모순과 역설을 재현하고 있다. 즉 『표류도』는 1950년대 법적 ‘정의’가 갖는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가부장적 권위를 대리하는 ‘법’의 식민성

29) 문준영, 위의 책, 902쪽.

을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 안에서 인간은 자기의 도덕적 존재 조건을 보호하며 방어한다.³⁰⁾ 예링은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적법한 저항과 투쟁을 통해 권리나 법을 보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수호는 존재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표류도』는 개인의 권리 수호가 생명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내포한다. 소설은 결말에 여성인물이 딸의 죽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결혼을 결심하면서 가부장제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흡사하지만, 이때의 결혼은 모든 상처의 극복과 새로운 삶의 모색 가운데서 선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성의 원리에 의한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당대 남성작가들과 차별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박경리는 인간 억압의 모든 문제를 생명성에서 찾고자 하며, 생명 중시 사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때 여성의 문제 또한 근원적인 인간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³¹⁾ 박경리의 소설이 ‘운명’, ‘세계’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생명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표류도』는 젠더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여성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며 생명의 변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30) 르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윤철홍 역, 책세상, 2009. 57쪽.

31) 김혜옥, 『‘여성의 자존과 소외’ 사이에서 글쓰기』, 『『토지』와 박경리 문학』, 숲, 1996. 228쪽.

참고문헌

1. 자료

『희망』, 『여원』

김윤식,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박경리, 『Q 씨에게』, 숲, 1993.

박경리, 『표류도』, 나남출판, 1999.

2. 단행본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 모음, 2015, 128쪽.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1~577쪽.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77쪽.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344쪽.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270쪽.

서동욱, 「들뢰즈의 법 개념」,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7.11월호.

메리 E. 위스너-헝크스, 『젠더의 역사』, 노영순 역, 역사비평사, 2001, 137쪽.

아르노기그, 『법, 정의 국가』, 민혜숙 역, 동문선, 2003, 102쪽.

르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윤철홍 역, 책세상, 2009, 57쪽.

3. 논문

김명주, 「국가-법-폭력'에 대항하는 아이러니와 유머의 정치학 - 들뢰즈의 '문학철학'에 나타난 '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99~129쪽.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 - 박경리의『표류도』론」, 『한국학이론과비평』 45집(13권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235~255쪽.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연구』 제47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77~301쪽.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155~186쪽.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무엇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53-1960년」, 『사회와 역사』 94집, 한국사회사학회, 2012, 261~295쪽.

Abstract

Law and Gender Politics in 1950s Novels

: Pak, Kyong-ni 『*Pyoryudo*』

Hong, Sun-ae

This thesis discusses the post-war law recognition and the process of gender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described in *Pyoryudo* written by Pak Kyongni. The law has the right to be executed as a 'justice' that protects the order of the state and the rights of individuals. However, the problem of gender inequality was amplified by the conservative discourses that tried to reestablish the traditional hierarchy in the situation of colonial law and US military rule after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law and norms, gender is constructed a priori and reflected as a result of recognition. This novel makes discussions of literary jurisprudence possible by presenting gender inequality in postwar law in Korea. The 'legal' struggle and the 'jail' narrative recreated in *Pyoryudo* show humans alienated from the law. The story describes a state of vacuum, a 'closed door', in front of the law through the contents of judgment of the female prisoners and the situation of imprisonment. This novel recreates the process of restraint and oppression of gender by law through the victimized mother from the concubinage, the sexual collapse of Gwang-hee, a waitress of a coffee shop, and the trial of Kang Hyeon-hoe, the manageress of the coffee shop. And the reaction of fear and anxiety caused by the patriarchal law becomes the cause of seizure

and murder intention. The law, which was under the postwar colonial restriction, was enforced by promotion of the advocacy of patriarchy and the maternal myth of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it was violent in the justification of reconstruction. If the postwar social chaos was controlled by the name of reconstruction and the 'law' realized the firm belief in the sex difference of patriarchal ideology, this novel was a narrative that resisted and cracked such customary law and order which was centered around the paternal authority.

Key words : legal recognition, a war widow, 1950s, Gender, woman literature, concubinage, *apre-guerre* girl, "woman free from habitual debauchery"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